##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5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민병덕·김현정·김남근

이정문 · 정준호 · 김 윤

박선원 • 이수진 • 이강일

강준현 · 염태영 · 천준호

서영석 • 이재관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 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예금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 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 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① 은행의 대출금리는 제33조에 따라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 또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금리 중 은행이 선택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항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이율(이하 "가산금리"라 한다)를 더하여 산정한다.

- 1. 대출업무 수행에 드는 업무 워가
- 2.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 3.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 4. 목표이익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 2. 제30조제1항의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리는 제1항 각 호및 그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약기간 중에 있는 대출계약 중 약정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출계약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대출금리는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산정된 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
	시) ① 은행의 대출금리는 제3
	3조에 따라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 또는 사단법인 전
	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
	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금리</u>
	중 은행이 선택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이율(이하 "가산금리"
	라 한다)를 더하여 산정한다.
	1. 대출업무 수행에 드는 업무
	원가
	2.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3.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u>4. 목표이익</u>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서는

- 아니 된다.
- 1.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 2. 제30조제1항의 지급준비금및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 <u>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u> <u>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u> <u>출연금</u>
  -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6 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 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 단중앙회 출연금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출연금
-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준 금리 및 가산금리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리는 제1항 각 호 및 그 세부항목별 로 공시하되, 영업기밀에 해당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 제6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 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 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 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 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 설></u>

2. ~ 8. (생략)

하는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 2.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3. ~ 9. (현행과 같음)